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 A charitable institution limited by guarantee registered in Hong Kong

(서울사무소)

## 결 정 문

---

사건번호: **KR-1000040**  
신청인: 인터 이케아 시스템스 비브이  
피신청인 : 남지희(namjeehee)

---

###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청인: 인터 이케아 시스템스 비브이, 네덜란드 델프트 2616  
올로프팔에슈트라트 1

대리인 :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변호사 김동환, 임호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3가 60-1  
극동빌딩 14층

피신청인: 남지희(namjeehee), 대한민국 경기도 과주시 월릉면  
영태리 815

분쟁 도메인이름은 “ikeab.com”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주식회사  
네티피아(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40-21 우림블루나인  
A동 16층)에 등록되어 있다.

###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10. 5. 24.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 라고 함)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0. 5. 25.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10. 5. 25.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10. 5. 26.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아시아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센터 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 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점검하였다.

2010. 5. 28. 센터는 ‘신청서 전송 표지’ 를 분쟁해결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 및 등기우편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고, 2010. 5. 31. 피신청인에게 도달하였음을 배달증명 우편을 통해 확인하였다. 2010. 6. 3. 피신청인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10. 6. 20.임을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010. 6. 22.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답변서미제출통지를 2010. 6. 22.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

2010. 6. 22. 센터는 이 사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1인 조정부로서 이덕재 조정위원에게 선임을 요청하였고, 2010. 6. 22. 이덕재 조정위원은 조정인으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2010. 6. 24. 조정부 구성예정통지를 하였고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적법하게 2010. 6. 30. 조정부를 구성하였다. 센터는 관련 서류 일체를 2010. 7. 2. 조정부에서 송부하였고 2010. 7. 3. 조정인 에게 도달하였음을 배달증명 우편을 통해 확인하였다.

### 3. 사실관계

신청인은 1943년 설립되어 가구와 주방용품 및 욕실용품 등을 판매하는 네덜란드 회사로서, 특히 조립식 가구에 널리 알려져 있는 IKEA의 등록상표 및 컨셉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전세계의 IKEA 대리점 협약 체결을 맡고 있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권리자이고, 위 웹사이트에서는 소파, 의자, 책상 등의 가구를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이 운영되고 있다.

#### 4. 당사자들의 주장

##### A. 신청인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신청인은 조립식 가구, 주방용품, 욕실용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전 세계 다수의 국가에 등록 되어 있고 널리 알려져 있는 상표 ‘IKEA’ 권리자이며, 대한민국에서도 이들 지정상품 등에 다수의 상표를 등록하여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상표 ‘IKEA’ 와 유사하다.

(3) 인터넷 주소창에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입력하면, 피신청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로 연결되는데 위 쇼핑몰에서는 가구,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4)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

#####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 A. 서비스표와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서 gTLD 표시인 .com을 제외한 ‘IKEAB’와 신청인의 등록상표 ‘IKEA’를 비교해 보면, ‘IKEAB’는 사전상 특별한 의미가 없고 단지 신청인의 상표로서 알려져 있는 ‘IKEA’의 말미에다 알파벳 ‘B’를 결합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두 표장은 외관과 호칭에서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답변을 제출한 바 없으며 기타 피신청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인정할 자료 혹은 정황은 존재하지 않는바, 따라서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 혹은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신청인의 등록상표 ‘IKEA’는 1943년 스웨덴에서 시작하여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독일 등 유럽국가들과 일본, 호주, 홍콩, 캐나다 등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표이고, 대한민국 특허청에도 1990년경부터 다수의 가구 등 다수의 상품류에 여러 건이 등록되어 있어 가구 등의 상품분야에서 어느 정도 유명한 상표임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상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신청인이 이 상표와 극히 유사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점, 갑 제6호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하면 연결되는 웹사이트에서 피신청인이 대표자로 있는 회

사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위 쇼핑몰에서는 침대, 소파, 의자 등 신청인의 주력상품 중 하나인 가구를 판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은 위 쇼핑몰에 등장하는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야기할 의도로 인터넷상의 이용자를 위 쇼핑몰로 유인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

## 6. 결정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조정부는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인 ‘ikeab.com’ 을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

이덕재  
1인 조정인

결정일: 2010년 7월 14일